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지연 등 행정사무조사 증인 불출석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

의안 번호	제 호
----------	-----

제안연월일: 2025. 8. 14.

제안자: 제2세종문화회관건립지연등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1. 주 문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지연 등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아래 제안
이유와 같이 증인 불출석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함.

2. 제안이유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지연 등 행정사무조사 제6차 회의 시 증인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증인은 불출석하였으므로,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지연 등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의결로 「지방자치법」과 「서
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
라 과태료 부과를 요구하고자 함.

3. 과태료 요구 내용

대상자		출석요구일시	과태료 부과사유	과태료 금액
직 위	성 명			
(전)영등포 구청장	채현일	'23. 4. 12. (수) 10:00	지방자치법 제49조에 의거 출석하지 아니함	미정 (500만원 이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근거

4. 참고사항

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참 고 자 료

1 지방자치법

제49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 ④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을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⑤ 제4항에 따른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제4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2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등)

- ⑤ 법 제49조제5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3 서울시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 ① 법 제49조제4항에 따른 현지확인의 통지 및 서류의 제출이나 구청장,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의 요구는 늦어도 그 현지확인일·서류제출일·출석일 등의 3일 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 같은 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의장의 통지에 의하여 구청장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